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9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1. 1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11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12.9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청소행정과장 최현우】

### 가. 제안이유

기금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, 위원회의 구성 및 용어 일부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- 위원회의 구성 정비(안 제5조제4항제1호~4호)
- 용어 정비 및 미비점 보완 등 명확성 제고  
(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5조제2항)
- 상위규범 준용에 따른 조례 내용 삭제(제11조 및 제15조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금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, 위원회의 구성 및 용어 일부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  
안 제2조의2에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, 안 제5조제4항에 위원회 구성 중 위원의 수를 이내로 변경하며, 안 제11조(수당 등), 안 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을 불필요하여 삭제함.
- 검토의견으로는  
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 가능한 내용이므로 중복된 안 제11조(수당 등)을 삭제하고, 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은 상위규범인 조례에서 하위규범인 규칙을 준용한 조항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며,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위원회 구성 등을 일부 정비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